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107 발의연월일: 2021. 6. 25.

발 의 자:김선교・이철규・김예지

태영호 • 이만희 • 정운천

김형동 • 박대수 • 하영제

김석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에게 수렵면허시험 합격 후 수렵면허를 받도록 하고,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등은 수렵면허를 취소·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수렵면허의 취소·정지 사유에 열거된 "수렵"에 "유해야 생동물의 포획"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.

이에 수렵면허의 취소·정지 사유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수렵면허의 취소·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 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수렵면허의 취소·정지) ①	제49조(수렵면허의 취소·정지) ①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렵면허를	
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수럽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	
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	
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	
수 있다. 다만, 제1호와 제2호	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	
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의2.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
	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
	<u>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</u>
	를 준 경우
4. ~ 10. (생 략)	4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